

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

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(제5조 관련)

1. 도안



<도안 예시>

2. 표시방법

가. 크기

- ①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.
- ② 가독성을 고려하여 세로 10mm 미만의 사용을 금한다.
- ③ 표시 적용 시 반드시 공간 규정상의 여백(Clear Space)을 확보한 후 사용해야 한다.

나. 색상

- ①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는 기본형*을 중심으로 사용해야 한다.

* PANTONE 362 C, #4FB233, C68 M0 Y100 K0 R79 G178 B51

PANTONE 2292 C, #AACE36, C40 M0 Y90 K0 R170 G206 B54

- ② 1도**로 인쇄해야 하는 제한적 상황에서는 흑백형***을 사용할 수 있다.

** 한 가지 색만을 사용한 인쇄 방식으로 주로 먹색 잉크 사용

*** #898989, C0 M0 Y0 K60 R137 G137 B137

#3E3A39, C0 M0 Y0 K90 R62 G58 B57

다.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안에 수탁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

사용한다.

라. 공급망관리체계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우,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입력할 수 있다.

마. 그 밖에 표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에서 제공하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표시 사용 매뉴얼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.